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<br>업<br>연<br>도 | . . . ~<br>. . . . | <b>가 산 세 액 계 산 서</b> | 법<br>인<br>명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사<br>업<br>자<br>등<br>록<br>번<br>호 |  |

## 1. 가산세액의 계산

| ① 구 분          |    |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| ② 계산기준             | ③ 기준금액       | ④ 가산세율        | ⑤ 코드       | ⑥ 가산세액      | ② 계산기준              | ③ 기준금액 | ④ 가산세율        | ⑤ 코드 | ⑥ 가산세액 |
| 무기장            |    | 산출세액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/100        | 27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수입금액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7/10,000      | 28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무신고            | 일반 | 무신고납부세액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(10)/100    | 29         |             | 무신고납부세액             |        | 20(10)/100    | 42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수입금액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7(3.5)/10,000 | 30         |             | 수입금액                |        | 7(3.5)/10,000 | 43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부정 | 무신고납부세액            |              | 40(20)/100    | 31         |             | 무신고납부세액             |        | 40(20)/100    | 44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수입금액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60(30)/100    | 80         | ' 15.1.1.개시 | 수입금액                |        | 14(7)/10,000  | 45   |        |
| 과소신고           | 일반 | 과소신고납부세액           |              | 10/100        | 3          |             | 과소신고납부세액            |        | 10/100        | 46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과소신고납부세액           |              | 40/100        | 22         |             | 과소신고납부세액            |        | 40/100        | 47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부정 | 과소신고납부세액           |              | 60/100        | 81         | ' 15.1.1.개시 | 과소신고 수입금액           |        | 14/10,000     | 48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과소신고 수입금액          |              | 14/10,000     | 23         |             | 공제감면세액              |        | 40/100        | 72   |        |
| 납부지연           |    | (일수)<br>미납세액       | ( )          | 2.2/10,000    | 4          |             | (일수)<br>미납세액        | ( )    | 2.2/10,000    | 51   |        |
| 지출증명서류         |    | 미(하위)수취금액          |              | 2/100         | 8          |             | 동업기업 가산세<br>배분액     | ( )    |               | 65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합 계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53   |        |
|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① 구분           |    | ② 계산기준             | ③ 기준금액       | ④ 가산세율        | ⑤ 코드       | ⑥ 가산세액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무신고            | 일반 | 무신고납부세액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(10)/100    | 83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수입금액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7(3.5)/10,000 | 84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부정 | 무신고납부세액            |              | 40(20)/100    | 85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수입금액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4(7)/10,000  | 86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과소신고           | 일반 | 과소신고납부세액           |              | 10/100        | 87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과소신고납부세액           |              | 40/100        | 88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부정 | 과소신고 수입금액          |              | 14/10,000     | 89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납부지연               | (일수)<br>미납세액 | ( )           | 2.2/10,000 | 90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합 계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91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법정납부기한<br>( . . . )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납부일<br>( . . . )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
## 2.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

| ⑦ 구분         |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       |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과소신고 납부세액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⑨ 계         | ⑩ 일반 | ⑪ 부정 | ⑫ 부정<br>(국제거래) | ⑬ 계       | ⑭ 일반<br>[⑧×(⑩/⑨)] | ⑮ 부정<br>[⑧×(⑪/⑨)] | ⑯ 부정<br>(국제거래)<br>[⑧×(⑫/⑨)] |
| 각 사업연도<br>소득 | 과소신고<br>기납부세액 과다 등 |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토지 등<br>양도소득 | 과소신고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작성 방법

- 무기장가산세  
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작은 금액은 ( )에 적습니다.
- 무신고가산세  
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작은 금액은 ( )에 적습니다. 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·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%,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- 과소신고가산세  
가.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(⑩), 부정과소(⑪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⑫)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(⑭), 부정과소(⑮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⑯)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  
나. ⑭, ⑮,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  
다.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작은 금액은 ( )에 적습니다.  
라.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(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)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'기납부세액 과다 등'의 칸에 적습니다.  
마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%(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%,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%,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%,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- 납부지연가산세  
미납세액에 가산세율(2.2/10,000을 적용하되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을 적용한다)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.
- 지출증명서류 미수취·허위수취 가산세  
미수취·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.
-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
가. 미제출금액 등에 1/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나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/1,000의 가산세율을,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/10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다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3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,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/10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라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3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,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/10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 다만,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
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(출자지분)의 액면금액(출자가액)에 1/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
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, 누락제출,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(출자지분)의 액면금액(출자가액)에 5/1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\* 2012.1.1.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, 2013.1.1.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
- 계산서 및 (세금)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
미발급 또는 가공(위장)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/100의 가산세율을,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/100의 가산세율을, 계산서·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/1,000의 가산세율을,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5(3)/1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,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. 다만, 계산서·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\* 2012.1.1.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(위장)수수분부터 2/100의 가산세를 적용, 종전의 경우 1/100의 가산세를 적용  
\*\* 2016.12.31.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(1)/1,000의 가산세를 적용
-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 
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(2020.1.1.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)에 5/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/1,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-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 
가.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/100의 가산세율(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)을 적용하고,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/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(미가맹기간/해당 사업연도의 일수)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\*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.  
나.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'19.1.1.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(10)%를 적용
-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
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/1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\* 2014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- 중간에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: 중간에납부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.
-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: 배분할 금액(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)에 배분비를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.
-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
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작은 금액은 ( )에 적습니다.
-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 
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/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/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-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서식의 ⑭란, ⑮란 및 ⑯란에 각각 적습니다.
-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